

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에따른가경어린이집제척청원

# 검 토 보 고 서

건설교통위원회

전 문 위 원

# 검 토 보 고

## 1. 청원현황

- 가.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 : 1997년 10월 20일, 제 97-1호
- 나. 청 원 인 :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15-9 민철기
- 다. 소 개 의 원 : 박 만 순 의원
- 라. 청 원 요 지 : 청주 가경4지구 택지개발 토지이용 계획도상 고등학교 예정 용지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가경어린이집을 택지개발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청원임.

## 2. 검토의견

- 가. 내 용 : 청원현황 라항과 동일
- 나. 검토의견

- 1) 금번 청원서가 접수된 청주 가경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'96. 12. 5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,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'97. 10. 9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지구입니다.
- 2) 당 지구내에 위치한 가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'96. 4. 18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설립당시 280.5㎡ 규모에 국비 58,212천원, 도비 54,054천원, 시비 54,054천원 등 166,320천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38,280천원등 총 204,6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여명의 영·유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.

3) 그러나 당 사업지구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제척요구는 충청북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, 또한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청원 사항이 우리도의 사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원의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,

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사항으로서,

청원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치 목적이 영유아의 조기교육 실시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시설된 것으로 볼 때 고등교육과 같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에 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.